

#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1726
------------	------

2017. 4. 20  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

-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17. 4. 20.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정유승 주택건축국장)

### 제안이유

가.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지방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관리와 운영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나. 임대주택형 공공기숙사의 관리를 기존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위치·면적 :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(3,874.4m<sup>2</sup>)
- 규모 : 연면적 8,997m<sup>2</sup> 지하1층 지상 7층
- 건립실수 : 총 193실 382호(일반실(2인1실) 189실/  
장애인실(1인1실) 4실)
- 입주개시 : 2014.3.29.
- 참여지자체 : 14개 시·군

참여 지자체	계	태안	순천	나주	광양	고흥	김천	경산	예천	홍천	완주	남해	영동	의성	청주
참여분(실)	178	20	35	20	30	20	15	5	7	2	2	5	2	5	10
입주대상(명)	356	40	70	40	60	40	30	10	14	4	4	10	4	10	20

나.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7.1.~2020.6.30. 예정)
- 위탁사무
  - 임대사업자 업무 : 임대차계약, 임대료부과, 입주·퇴거, 시설개보수,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
  - 주택관리업무 : 경비·청소, 시설유지관리, 관리비·사용료 징수 및 사용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협약(서울주택도시공사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대행사업)제1항
  -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
-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업무의 대행)제1항·제2항
  -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,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9호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재개발·재건축 임대주택을 위·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. 공공주택 개발, 공급 및 관리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, 업무경험 축적 등의 역량을 갖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임.
- 현재 기숙사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지자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기숙사를 위탁운영하는 안(「지자체연합 제10차 실무협의회」, '15.4.)을 결정 및 동의하였음.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#### 동의안 제출 배경

- 이 동의안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지방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일대에 기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관리와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 동의1)를 받고자 서울특별시장의 2017년 4월 4일 제출하여 4월

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## □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현황

- 내발산동 기숙사 시설은 서울 거주 지방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2)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약을 통해 2013년 3월 18일 착공하여 2014년 3월 29일 준공된 시설로서, 부지면적 3,874㎡에 지하1층/지상7층으로 총 193실(382호)을 건립하여 현재 14개 시·군 출신 대학생이 178실을 사용하고 있음.
- 재원은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3)에 따라 토지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(실당 1억원)와 운영비(호당 연간 250만원)는 참여 지자체에서 부담4)하되, 참여 지자체는 부담한 건축비에 해당하는 기숙사 및 부대시설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지니며, 입주학생은 현재 기숙사비로 매월 12만원을 납부하고 있음.

### ※ 기숙사 현황

- 위치·면적 :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, 3,874.4㎡
- 규 모 : 연면적 8,997.15㎡ (지하1층/지상7층)
- 사 업 비 : 건설비 20,060백만원 (시비 3,992백만원 포함)
- 건 립 실 수 : 총 193실 382호(일반실(2인1실) 189실/ 장애인실(1인1실) 4실)
- 입 주 개 시 : 2014.3.29.
- 참 여 지 자 체 : 14개 시·군 178실

- 1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(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)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) 「희망동지 공공기숙사 건립계획 검토」(시장방침 제220호 :'12.6.29), 「지방자치단체 협력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계획」(시장방침 제269호:'12.8.25)
- 3) 「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서」(2014. 2. 27) 제5조 및 제7조
- 4) 기숙사내 지역도서관의 건축비와 운영비는 서울시가 부담

○ 잔 여 실 : 15실 26호(일반실 11실, 장애인실 4실)

참여 지자체	계	태안	순천	나주	광양	고흥	김천	경산	예천	홍천	원주	남해	영동	의성	청주
참여분(실)	178	20	35	20	30	20	15	5	7	2	2	5	2	5	10
입주대상 (호명)	356	40	70	40	60	40	30	10	14	4	4	10	4	10	20

○ 참여조건

- (지자체) 건축비 1억(1실당), 운영비 부담금 년 250만원/1인당
- (입주학생) 기숙사비 : 12만원/월
- ▶ 기타 : 참여 지자체에 30년간 무상사용권 부여



○ 기숙사 운영의 수입구조는 지자체 부담금(호당 연간 250만원), 기숙사비(월 12만원)임(〈별첨〉 참조). 기숙사 운영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2014년 5억 8,100만원, 2015년 6억 7,800만원, 2016년 6억 6,800만원이며, 이 중 시와 SH공사간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될 경우 위수탁 수수료 등 연 2억 4천 여원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임.

<2016년 기숙사 운영비 수입 및 지출현황(SH공사)>(12월 말 기준)

(단위: 원)

구분	수입	지출	잔액
지자체 부담금	528,641,192	124,824,294	403,816,898
기숙사비	311,560,074	309,597,282	1,962,792
<b>합 계</b>	<b>840,201,266</b>	<b>434,421,576</b>	<b>405,779,690</b>

<운영관리비 당초 산출액 및 실제지출액 비교> (12월 관리비: 다음해 2월에 지급 및 지출)

(단위 : 천원)

합계	당초 예상금액*)	비고	2014년 지출액 04~12월	2015년 지출액 1~12월	2016년 지출액 1~12월
<b>총 계</b>	<b>796,932</b>	-	<b>581,567</b>	<b>677,959</b>	<b>668,185</b>
<b>소 계</b>	<b>301,588</b>	-	<b>241,521</b>	<b>241,521</b>	<b>241,521</b>
위수탁 수수료	102,035	서울시와 위수탁 계약 미체결로 서울시로부터 위탁수수료 미지급분	41,968	41,968	41,968
공가관리비	30,483	1년 평균금액산정	30,483	30,483	30,483
수선유지비	123,768	2013년 재개발 추정액	123,768	123,768	123,768
특별충당금	45,302	-	45,302	45,302	45,302
<b>소 계</b>	<b>495,344</b>	-	<b>340,046</b>	<b>436,438</b>	<b>426,664</b>
일반관리비 (난방비 등)	204,629	발생액 평균 추정	136,954	175,561	172,909
제경비	52,800	발생액 평균 추정	41,490	42,106	39,649
관리원 용역비	237,915	관리원 9명 (연차,퇴직금 제외)	161,602	218,771	214,106

- 공가관리비는 2014.3~2015.3월 발생액기준 추정
- 수선유지비는 재개발 발생 금액 기준 추정
- 특별수선충당금은 준공후 1년후 부터 정산대상임(서울시에서 적립시 제외)
- 관리원은 10명(최초인력) 근무인원으로 금액 산정
- 일반관리비(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, 가스비, 소독비, 승강기유지비, 수선비, 청소제비용품비, 복리후생비), 제경비(사무용품비, 관리용품비, 피복비, 통신비, 잡비 등) 포함.
- ※  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시가 SH공사에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 금액임.
- \*)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서 추정한 금액임.
- 〈「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」(임대주택과-5396, 2015.5.1.)〉

## □ 공공기숙사 운영·관리 관련 추진경위

- 당초 서울시는 2014년 4월 13일 개원한 이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최초 2년간 민간에 위탁한 후 재단을 설립하여 관리할 예정이었음<sup>5)</sup>. 그러나,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대학생의 입주와 동시에 민간위탁 선정·운영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, 서울시는 「위탁계약 체결 전 한시적 운영계획」(임대주택과-1398호, 2014.2)을 수립하여, 개원이후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“SH공사”라 함)에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한시적으로 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음.
- 이 후 2015년 4월 30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제10차 실무협의회<sup>6)</sup>에서 공공기숙사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재단설립안이 부결되고 SH공사에서 계속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<sup>7)</sup>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SH공사가 임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적정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('15.7.21~'15.11.7)하고<sup>8)</sup>, 그 결과<sup>9)</sup>에 따라 적정수

5) 이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참여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으로, 「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서」('14.2.27) 제8조에도 명시되어 있음.

제8조(공공기숙사 운영) 공공기숙사 운영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가 주관이 되어 준공이후 최초 2년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이후 운영방안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 협의한다.

- 6) ‘공공기숙사 실무협의회’는 「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협약서」('14.2.27)에 따라 서울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(기숙사의 건축비 부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)가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·운영하고 있음. 제10차 실무협의회에서는 ‘공공기숙사 운영비 절감’ 등을 위해 재단설립안을 부결시키고 SH공사에서 계속 관리·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.
- 7) 1인당 월 기숙사 운영비용은 재단설립시 33만1천원, SH공사 위수탁관리시 17만4천원(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 검토, 2015.5.1.)
- 8) 용역을 시행한 것은 주택도시공사가 그 동안 재개발·재건축 위탁수수료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, 2014년 8월 SH공사에 대한 시 경영감사담당관(현 감사담당관) 감사 결과, 주택재개발·재건축 임대주택 위탁수수료 산정에 대한 부적정 지적 및 조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임. 지적 사항으로는 “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위·수탁 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고, 반면 매년 신규 임대주택 매입으로 임대료 합계액이 증가하게 되어 위·수탁경비 요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'15년부터는 급격한 손실 발생 예상된다”는 것이었음.

수료를 반영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 때문으로 이해됨.

**수수료 체계 개선 (학술용역 결과 반영)**

- ▶ 표준위탁수수료(호당 217,454원) 적용 :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
- ▶ 실 소요액 기준 : 수선유지비, 공가관리비, 특별수선충당금
- ▶ 산출내용(안)
  - 호(戶)당 \*217,454원/년 × 193 ≒ 41,968,000원(년간)

○ 서울시는 관련 법령, 조례 및 시 방침10)에 따라 수의협약으로 SH공사에 임대사업 및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할 계획임. 이는 SH공사가 서울시와 장기안심주택(공공임대주택) 관리 및 공급에 대해 위·수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과

9) 「재건축·재개발 임대주택 수수료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」 결과

※ 위탁수수료 산정 개선

- 종전 정률제에서 위탁경비 고정
  - 임대주택 월 표준임대료의 30% → 단위(호)당 표준 위탁수수료 적용
  - 인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하며, 최근 3개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“시”와 “SH공사”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
- 수선유지비는 차년도 실 소요액 기준 협의산출
- 공가관리비는 과년도 공가관리비 지출 평균액 기준으로 구분 편성
- 특별수선충당금(임대료 총액의 1만분의4)은 임대주택 법령에 따라 구분편성하여 SH공사에서 대행사업비로 별도 관리

10) 수의협약에 대한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
-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·제2항
- ※ 해당사무를 위탁하는 조례 및 방침서
  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대행사업)제1항
    -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  -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업무의 대행) 제1항·제2항
    -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,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 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9호
    -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      - ※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2호 :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「내발산동 공공기숙사 향후 운영방안검토」 방침(임대주택과-5396호, '15.5.)



경험 축적 등으로 업무역량을 갖추고 있으며, 공개경쟁을 통해 SH 공사가 아닌 민간기업이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공공기숙사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될 수 있고, 지나친 이윤추구 등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.

#### □ 종합

-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SH공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강서구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려는 것으로,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, 참여 지방자치단체들이 SH공사에 기숙사를 위탁관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됨.
- 특히, ‘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’에서도 공공성 여하에 따른 시설운영, 민간위탁사무의 제한 여부, 직영운영 혹은 재단 위탁운영 방안, SH공사의 수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SH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한 바 있음.
- 다만, 서울시에서는 총 193실 382호 중 공실로 남아있는 15실 26호에 대해 서울출신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, 지자체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숙사의 당초 건립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4월 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지방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공공기숙사의 관리와 운영에 능률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- 나. 임대주택형 공공기숙사의 관리를 기존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위치·면적 :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 (3,874.4㎡)
- 규모 : 연면적 8,997㎡ 지하1층 지상 7층
- 건립실수 : 총 193실 382호(일반실(2인1실) 189실/장애인실(1인1실) 4실)
- 입주개시 : 2014.3.29.
- 참여지자체 : 14개 시·군

참여지자체	계	태안	순천	나주	광양	고흥	김천	경산	예천	홍천	완주	남해	영동	의성	청주
참여지분(실)	178	20	35	20	30	20	15	5	7	2	2	5	2	5	10
입주대상(명)	356	40	70	40	60	40	30	10	14	4	4	10	4	10	20

## 나.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7.7.1.~2020.6.30. 예정)
- 위탁사무
  - 임대사업자 업무 : 임대차계약, 임대료부과, 입주·퇴거, 시설개보수,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
  - 주택관리업무 : 경비·청소, 시설유지관리, 관리비·사용료 징수 및 사용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협약(서울주택도시공사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대행사업)제1항
  -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- 「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업무의 대행) 제1항·제2항
  -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,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9호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재개발·재건축 임대주택을 위·수탁계약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음. 공공주택 개발, 공급 및 관리 분야에 전문인력 확보, 업무경험 축적 등의 역량을

갖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능률적임.

- 현재 기숙사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지자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기숙사를 위탁운영하는 안(「지자체연합 제10차 실무협의회」, '15.4.)을 결정 및 동의하였음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【지방공기업법】

제71조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.

##### 【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】

제63조(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)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, 사전조사,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
2.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·인건비 및 부대경비
3.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
4.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
5.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

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,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,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.

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**【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**

제22조(대행사업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
**【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】**

제13조(업무의 대행)

- ①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서울공공주택의 개발,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**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**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.

- 8. 그 밖에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
사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

**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**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※ 동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제2호 :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임대주택과 임대사업팀 장태영 (☎ 2133-7056 )